# 디지털크리에이터(1인 미디어 창작자)산업 진흥법안 (최형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306

발의연월일: 2025. 3. 24.

발 의 자:최형두·최수진·박충권

서천호 · 서범수 · 박형수

이준석 · 정성국 · 송석준

박수민 · 조정훈 · 서일준

김태호 의원(13인)

### 제안이유

디지털 기술과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디지 털크리에이터와 관련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 2023년 기준 디지 털크리에이터산업의 매출 규모는 5.3조원, 종사자는 4.2만명에 달하며, 특히 청년층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은 다수의 사업체가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어, 지속적인 성장과 산업 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필요한 실정임. 또한,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이 방송·미디어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제도는 이를 독립적인 산업으로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을 하나의 독립적 산업으로 인정하고 공 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성장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디지털크리에이터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우수인력 발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다.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 분야의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융합 촉진,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금융 지원, 시범사업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 라.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 발전에 필요한 작업환경 개선, 실태조사, 전담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 마.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한 지원, 행동강령, 자율적 가이드라인 마련·시행에 관한 근거와 서비스제공사업자와 크리에이터 간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바. 계약당사자 간 공정계약 체결 및 표준계약서 마련 근거, 서비스제 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전담기관·지원센터 지정을 통한 관리·감독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 법률 제 호

## 디지털크리에이터(1인 미디어 창작자)산업 진흥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성장기 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디지털크리에이터"란 1인 이상의 사업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창의성·전문성이 내재되어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이 포함된 자료 또는 정보(이하 "디지털크리에이터 제작물"이라 한다)를 제작하여 제4호에 따른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제공사업자를 통해 유통하는 자를 말한다.
- 2.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크리에이터 제작물과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채 널 등의 기획·제작·배포·광고·이용제공 등의 서비스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 3.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한 것을 말한다.

-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이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라 한다) 중 디지털크리에이터 터가 이용자에게 디지털크리에이터 제작물을 전송하거나 유통 • 관리할 수 있는 수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중 정보통신망을 통해 디지털크리에이 터와 이용자, 이용자 간에 디지털크리에이터 제작물의 제공· 이용·공유 등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서비스
- 4.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제공사업자"란 디지털크리에이터 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국내 서비스 제공에 따른 총매출 액·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 진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재원의 확보) ① 정부는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예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 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 기금으로 이 법에 규정된 사업의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훈련 지원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정부는 디지 털크리에이터 및 디지털크리에이터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크리에이터 관련 정보를 종합 적으로 관리하고 디지털크리에이터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제2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우수 인력의 발굴 및 육성) ① 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크리에이터 제작물이 제작·유통·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우수 인력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창업 및 사업화 지원) 정부는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 분야 창업자 발굴 및 육성ㆍ지원 등에 관

한 사업

- 2.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 3. 디지털크리에이터 제작물 등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 분야의 사업화 지원
- 4.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 분야 창업자금의 금융지원
- 5. 그 밖에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 융합의 촉진) ① 정부는 디지털크리에이 터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고 전 분야에서 디지털크 리에이터산업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 융합 서비스 등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해외진출 지원) ① 정부는 디지털크리에이터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디지털크리에이터 관련 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 2. 디지털크리에이터 관련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 3. 디지털크리에이터 관련 국제행사 참가 지원
  - 4. 방송·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 마케팅·홍보활동
  - 5. 그 밖에 디지털크리에이터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금융 지원) ① 정부는 디지털크리에이터,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제공사업자,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디지털크리에이터,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제공사업자, 관련 사업자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1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정부는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 지원,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작업환경의 개선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작업환경 조사, 법률·재정 자문 지원 등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 작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3조(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

- 진흥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산업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디지털크리에이터,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제공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디지털크리에이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은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디지털크리에이

터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디지털크리에이터에 대한 작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
- 2. 디지털크리에이터에 대한 경영·법률·세무 등의 상담
- 3. 디지털크리에이터 간의 교류활동 지원
- 4. 디지털크리에이터 제작물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국내외 동향 분석
- 5. 그 밖에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 지원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이 위탁하는 사업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관련 법규 및 지정 조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수행한 경우
-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제공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 진흥을 위하여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제공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할 수 있다.
  - 1.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 등의 개발 지원 및 연구·개발 성 과의 확산
  - 2.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제공사업자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 3. 그 밖에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유통환경) ① 디지털크리에이터,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제공사업자 및 관련 사업자단체(이하 "디지털크리에이터등"이라한다)는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윤리적 원칙, 규범 등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② 디지털크리에이터등은 유통되는 디지털크리에이터 제작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유통·차단 관련 기준, 절차, 방법 또는 사전교육, 모니터링 등을 그내용으로 하는 자율적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에 따른 불법정보
- 3. 그 밖에 디지털크리에이터 제작물의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지털크리에이터등의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상생협력 촉진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크리에 이터와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제공사업자 간 상호이익의 증 진 및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크리에이터와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제공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디지털크리에이터와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제공사업자 등이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19조(협약체결의 권장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크리에에이터와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제공사업자가 디지털크리에이터 제작물 관계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협력을 약속하는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크리에이터와 디지털크리에이 터미디어서비스제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표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 체결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상생협력 기여자 선정·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크리에이터와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제공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에 기여한 자를 선정하고 포 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 기여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디지털크리에이터 제작물 관련 계약) ① 디지털크리에이터 제작물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 1. 계약금액ㆍ기간ㆍ갱신ㆍ변경 및 해제ㆍ해지에 관한 사항
- 2. 계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3. 수익의 분배에 관한 사항
- 4.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디지털크리에이터 활동 및 제작물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가 제 22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 제22조(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정 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디지털 크리에이터산업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디지털크리에이터등에게 이 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권고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또는 제21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사용하는 디지털크리에이터등에 대하여 제4

조에 따른 재원 지원 및 제10조에 따른 금융 지원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 제23조(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 제공 관련 준수사항) ① 디지털 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제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디지털크리에이터 제작물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 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
  - 2. 디지털크리에이터 제작물을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당사자 간에 적정한 수익배분을 하도록 노력할 것
  - 3. 디지털크리에이터 제작물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 대방에게 수익배분 방식, 계약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 또는 고지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보고·검사) ① 정부는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또는 지원센터에 위탁할 수있다.
- 제2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 또는 지원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 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